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하수관거 준설토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의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4년부터 2016년간 연도별 관내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관거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오니 등)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된 원주시 공공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추진 현황>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업비	추진방식	참여업소 수	폐기물발생량	폐기물처리비
2014년도	103,792	수의계약	6	476	21,030
2015년도	66,134	수의계약	5	265	8,182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하수관거 준설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